안양시 청년상 조례

제정 2019. 3. 5 조례 제3026호
일부개정 2020. 4. 1 조례 제3183호
일부개정 2020. 7. 10 조례 제3213호(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0. 12. 31 조례 제3269호(안양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1. 5. 13 조례 제330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 각 분야에서 근면 성실한 자세와 모범적인 생활로 지역사회 및 청년정책 발전에 귀감이 되는 안양시 청년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안양시 청년상(이하 “청년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청년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1, 2020. 12. 31, 2021. 5. 13>

1. 봉사 부문
2. 산업경제 부문
3. 문화예술 부문
4. 체육 부문
5. 청년활동 부문
6. 미래인재 부문

② 시상인원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1명으로 하고, 수상후보자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합한 수상후보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수상후보자) ① 수상후보자는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하 “청년”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상부문에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4. 1, 2020. 12. 31, 2021. 5. 13>

1. 봉사, 문화예술, 체육, 청년활동, 미래인재 부문의 수상후보자는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2. 산업경제 부문의 수상후보자는 시의 관내 직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거나 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3. 삭제 <2021. 5.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상 후보자로 할 수 있다.

제5조(수상자 선정기준) 부문별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1, 2020. 12. 31, 2021. 5. 13>

1. 봉사 부문: 내 고장 가꾸기, 이웃돕기 등 자원봉사 생활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부모, 조부모 등 웃어른을 공경하는 효심으로 가정생활의 귀감이 되는 청년 또는 자연 및 환경보호, 공해방지,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한 청년
2. 산업경제 부문: 근면 성실한 자세로 산업체에서 근무하거나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운영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청년
3. 문화예술 부문: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와 작품활동, 행사개최와 지원사업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청년
4. 체육 부문: 체육활동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시민의 체력향상과 지역의 체육 발전에 기여한 청년
5. 청년활동 부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청년역량 강화 등 건전한 청년문화 조성에 기여한 청년
6. 미래인재 부문: 도전정신과 잠재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거나 창작, 발명, 혁신 등을 통해 미래사회로의 발전과정에 기여한 청년

제6조(후보자 추천) ① 제4조에 따른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13>

1. 시의 실·국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소장·원장, 구청장, 시의 과 단위 부서의 장, 동장
2. 관내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각급 학교장, 청년단체장
3. 시 관내 종사자 5인 이상 기업체의 대표. 단, 제3조제3호에 따른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4. 5명 이상의 성인인 안양시민

② 수상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안양시 청년상 심

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1. 5. 13>

1. 시 청년정책 업무담당부서장
2. 청년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은 매년 시장이 위촉하고 해당년도 심의 종료와 함께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1. 5. 13>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지원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제9조(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심사대상자가 위원과 친·인척인 경우
2. 심사대상자가 위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구성원인 경우
3. 그 밖의 이해 관계자로 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의·의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③ 심사대상자가 위원의 심의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한정하여 제8조제3항의 재적위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 ① 간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적사실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심사 의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수상후보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상자 결정) ①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부문별로 심사 결정하며, 같은 공적으로 3년 이내 수상 경력이 있는 수상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회의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시상) 청년상의 시상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하며, 수상자에게는 시장의 상패를 수여한다.

제13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에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견학, 주요행사 초청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1 조례 제3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안양시 청년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㉘ 부터 ㊱ 까지 생략

부칙 <2020. 12. 31 조례 제3269호, 안양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 13 조례 제3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